

2022학년도 1학기 등록 일정 안내

I 등록 (재학생, 복학생, 복적 및 재입학생)

1. 기간 : 2022. 2. 21.(월) ~ 2022. 2. 25.(금) 5일간
2. 장소 : 농협중앙회,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(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)

II 복학(귀), 복적 및 재입학

1. 복학(귀)

- 신청기간 : 2021. 12. 15.(수) ~ 2022. 2. 28.(월)
- 신청방법 : 서울대학교 포털 → 학사정보 → 학적변동(신청) → 휴학·복학
 - ※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(부)로 제출
 - ※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**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(귀) 신청하여야 함**

2. 군 휴학생의 복학(귀) 신청

- 신청기간 : 2021. 12. 15.(수) ~ 2022. 3. 28.(월)
 - ※ 본등록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3. 28.(월)까지 반드시 복학(귀) 학적반영 후 **등록금 납부 완료**까지 확인
- 신청방법 : 서울대학교 포털 → 학사정보 → 학적변동(신청) → 휴학·복학
-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
 - 수업일수 4분의 1선 3. 28.(월)까지 전역자 :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
 - 수업일수 4분의 1선 3. 28.(월) 이후 전역자

구 분	제출 서류	검토사항
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(연가)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	전역예정증명서,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, 소속 부대장의 수학(복학)승인서	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,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
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(연가)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	전역예정증명서,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, 소속 부대장의 수학(복학)승인서,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, 학생 확인서	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

3. 복적 및 재입학

- 신청기간 : (1차) 2021. 12. 15.(수) ~ 12. 31.(금), (2차) 2022. 1. 1.(토) ~ 1. 14.(금)
- 허가일 : (1차) 2022. 1. 7.(금), (2차) 2022. 1. 21.(금)
- 신청방법 : **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(인터넷 신청 불가)**
 - ※ 2차 재입학(복적)은 1차 재입학(복적)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
 - ※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
 -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휴학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개강일(2022. 3. 1.) 이후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

4. 처리 확인 : 서울대학교 포털 → 학사정보 → 나의정보(종합정보) → 종합신청정보

III 휴 학

1. 신청기간

- 미등록 휴학 : 2021. 12. 15.(수) ~ 2022. 3. 28.(월) (수업일수 4분의 1선)
- 등록 후 휴학 : 2022. 2. 21.(월) ~ 2022. 4. 21.(목) (수업일수 4분의 2선 후 **가사휴학 불가**)
 - ※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(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)
 - ※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

2. 신청방법 : 서울대학교 포털 → 학사정보 → 학적변동(신청) → 휴학·복학

-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
-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

3. 휴학의 유효기간 : 1년(2개 학기)

-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(귀)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(**미신청 시 제적**)
- 2022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(귀)하여야 함(**미신청 시 제적**)
 - ※ 휴학연한(총 휴학 기간) : 학사과정 6학기, 석사과정 4학기, 박사과정 6학기, 석·박사통합과정 8학기
 - ※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: 군휴학(복무기간), 임신·출산휴학(2학기), 육아휴학(4학기), 질병휴학(4학기), 창업휴학(2학기), 권고휴학(4학기)

IV 유 의 사 항

1.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(수업연한 : 학사 8학기, 석·박사 4학기)

-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(등록 후 휴학생 포함)
-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

2. 기타 문의사항

업무	담당과	전화번호	업무	담당과	전화번호
휴·복학 및 재입학(복적) 등 학적변동	소속 대학(원) 학과(부)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	-	수강신청 관련	학사과	880-5042
			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	재무과	880-5107, 5113
등록기간	학사과	880-5032, 5033, 5034, 5035	장학금, 학자금 융자 관련	장학복지과	880-5078, 5079

2021. 12.

서울대학교 교무처장